

# 평창군세감면안 검 토 보 고 서

## 1. 회 부 경 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1. 9. 4 평창군수(재무과장)
- 나. 회부일자 : 2001. 10.12
- 다. 상정일자 : 2001. 10.13 제8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

## 2. 제 안 이 유

- 2001.7.22·7.23일 우리군 일부지역의 집중호우로 주택침수등 수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 3. 주 요 골 자

- 피해내용 : 주택침수 24동, 이재민 28명, 농경지 유실·메물 60ha  
(피해농가 334가구)
- 지방세 감면내용 : 총442명 7,299천원
  - 주민세 : 224명 1,105천원
  - 종합토지세 : 218명 6,194천원

## 4. 검 토 결 과

- 지난 7.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국지적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수해 군민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방세인 주민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여 주려는 것으로 주민세는 구분없이 전액 감면하여 주고 종합토지세는 종토세 10만원 이하인 농가는 전액을

종합토지세가 10만원 초과하는 농가는 10만원 정액을 감면하여 주려는

것입니다.

- 이것은 지방세법 제9조의 2와 동법시행령 제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